

2020년 9월 15일 발행인·편집인 : 이윤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4호

붙임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2020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1. 1. 1.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사무의 주체 변경 필요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사무 주체 변경 - 제2조(정의)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으로 변경

4.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미래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Otaesun0@korea.kr
-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8층 미래산업정책과)
- 3) 팩스 : 062-613-38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과(전화: 062-613-39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 ----- ----- ----- -----시장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 ----- ----- -----시장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입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 횟수 규정 삭제(안 제43조)
-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정비(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참조: 건축주택과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 613-4813, FAX : 613-4819, E-mail : yij02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양식(참고)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다목 및 마목”을 “다목, 마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제1호다목”을 “제1호자목”으로 한다.

다.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차. 영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제43조제4항 중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목 또는 라목에 정한 용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거리를 적용한다.)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 접하고 있는 경우 : 1.5미터 이상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상 접하고 있는 경우 :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포츠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차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포츠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차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5가구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독서실, 기숙사, 고시원.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비고 : 담장, 대문, 옹벽, 축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경비실 등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능) ① 영 제5조의5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결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제8조(기능) ① ----- ----- -----
1.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나. (생략)	1.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영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다.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라. ~ 아. (생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자.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 다목, 마목 및 차목----- ----- -----
<신설>	차. 영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영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마. (생략)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공동주택(30세대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의 건축	바.----- ----- 제1호차목----- ----- ----- -----
사. 삭제	
아. ~ 차. (생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생략)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0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위반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포함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연 2회, 그 외의 사항은 연 1회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이행	④ ----- ----- ----- ----- ----- ----- 말한다.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6호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광주광역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p><b>1. 개정이유</b>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개정</p> <p><b>2. 주요내용</b> 가.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규정 신설(안 제17조제4항) - 해당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 나. 공공주택지구 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신설(안 제17조제5항) -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25이하 -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이하 -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p> <p><b>3. 의견 제출</b>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도시재정비국 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062) 613 - 1774, FAX: (062) 613 - 1769, E-mail: wldud3116@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p>
--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을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영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2항제4호**”를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를 “**동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 를 “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 ” 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 을 “ 법 제17조제4항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을 “재개발사업”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조제6호” 를 “법 제2조제7호”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00분의 25이상” 을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50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50이상” 을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이상” 을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70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이하 “법” 이라 한다)</u>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 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말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 서류) 영 제2조제5호----- ----- ----- -----.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동</u> ----- <u>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u> -----.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생략)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 6. (생략)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 ----- -----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5. (생략) 6. 시장은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u>별</u> 제17조제4항-----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필요</u> ----- -----.
제10조의2(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10조의2(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용)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재개발사업</u> ----- -----
제12조(재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2. (생략)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4.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5.·6. (생략)	제12조(재원) ----- ----- 1.·2. (현행과 같음) 3. ----- ----- <u>같은 법</u> ----- <u>제4조제3항</u> ----- ----- 4. ----- ----- <u>「지방세법」</u> ----- <u>제112조제1항제1호</u> ----- ----- ----- 5.·6.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용자의 범위)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교부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14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용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법 제2조제7호</u> -----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임대주택의 건설비용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17조(임대주택의 건설비용 등) ① ----- ----- ----- ----- <u>25이상 100</u> ----- <u>분의 50이하</u> ----- -----.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재정비축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재정비축진 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략)

② -----  
----- 이  
상 100분의 75이하-----  
-----.

③ -----  
----- 비율” -----  
-----  
-----  
-----  
-----  
-----  
-----  
-----  
-----  
-----  
----- 100분의 70이하-----  
-----.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 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부 요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과(☎062-613-6045)  
- 전자우편(이메일) : runelune3@korea.kr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주) 상무사옥 14층  
- 팩스 : 062-376-0973

※ 이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납부고지서를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그 하한액은 200원으로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 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납부 고지서를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그 하한액은 200원으로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0-107호**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모바일·전자우편을 통한 전자고지 이용 신청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전자고지 이용을 늘리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요금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
- 요금할인에 대한 내용을 제20조의2로 신설
  - 할인대상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로 종이고지서 미수령 대상
  - 할인금액 : 부과요금의 1%(200원 ~ 5,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참조: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8호**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 비율을 과반수로 정함.(제13조제4항)

나.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지급보증 은행범위 완화를 위해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제31조5항)

다. 법령에서 정한 조례 위임 범위 내로 수정 및 인용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참조: 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서식

조례안	검토안	의견(사유)

라.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062-613-1771, FAX : 062-613-1769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E-mail : yun76@korea.kr)

**4. 기타사항**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87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봉선2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남구청(도시계획과, 회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15.

광 주 광 역 시 장

**□ 봉선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봉선2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봉선2동 일원	134,962	증)1,497	136,45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변 경 - 위치 : 남구 봉선로 94전 일원 - 면적 : 134,962㎡ → 136,459㎡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완화차로 설치를 위하여 유안근린공원 일부를 공공 청사 및 도로로 변경하고 해당 면적만큼 대체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134,962	증)1,497	136,459	100.0		
주거지역	소계	102,231	증)1,497	103,728	76.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047	증)1,497	32,544	23.9	
	제3종일반주거지역	57,480	-	57,480	42.1	
	준주거지역	13,704	-	13,704	10.0	
녹지지역	소계	32,731	-	32,731	24.0	
	자연녹지지역	32,731	-	32,731	24.0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조례)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남구 봉선동 134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1,047 → 32,544	220%	· 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 ※용도지역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 정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	25	주간선도로 2,680(335)	백은동14호 광장	용산동56호 광장	일반도로	-	건:2088호 (05.11.12)	
변경	대로	3	16	25	주간선도로 2,680(335)	백은동14호 광장	용산동56호 광장	일반도로	-	건:2088호 (05.11.12)	폭원 일부 조정
기정	중로	1	189	20	집산도로 134	대로3-16	중로3-153	일반도로	-	광:2001-374호 (2001.8.23)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도로 89	중로1-189	소로3-2	일반도로	-	광:2001-374호 (2001.8.23)	
기정	중로	3	153	12	집산도로 242	대로3-16	소로1-173	일반도로	-	광:2001-374호 (2001.8.23)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7	중로3-152	중로3-153	일반도로	-	광:2001-374호 (2001.8.23)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64	중로3-152	중로3-153	일반도로	-	광:2001-374호 (2001.8.23)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1	중로3-152	중로3-153	일반도로	-	광:2001-374호 (2001.8.23)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26	중로3-153	중로3-153	일반도로	-	광:2001-374호 (2001.8.23)	
기정	소로	3	4	3	특수도로 16	대로3-16	중로3-152	보행자 전용도로	-	광:2001-374호 (2001.8.23)	

※ ( )는 사업지구 내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6	대로3-16	·폭원변경 - B : 25m → 25m(0.25m 증)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633		37,633		
기정	183	봉선2 근린공원	근린공원	봉선동 88공 일원	12,056	-	12,056	황2005-55호 (2005.4.4)	
변경	103	유안공원	근린공원	봉선동 134공 일원	20,675	-	20,675	건고488호 (85.11.12)	위치조정
기정	277	봉선지구 공원	어린이 공 원	봉선동 1064-3공 일원	4,902	-	4,902	황2005-55호 (2005.4.4)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3	유안공원	위치 조정 (면적 변경없음)	·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완화차로 설치를 위하여 유안공원 일부를 공공청사 및 도로로 변경하고 해당 면적만큼 대체토지를 공원으로 편입

2) 녹지(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32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대로3-16 접변	-	증)1,463	1,463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2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면적 : 1,463㎡	·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위해 유안 공원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 (해당 면적만큼 대체토지를 공원으로 편입)

2) 문화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문화시설용지(변경)

【기정】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계			3,728	
공1	3,728	대로3-16, 중로1-1에 접변 (봉선동 1068)	3,728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계			5,191	
공1	3,728	대로3-16, 중로1-1에 접변 (봉선동 1068)	3,728	기정
공2	1,463	봉선동 134공 (대로3-16, 근린공원103에 접변)	1,463	신설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7) 공원(변경)

【기정】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 계		3획지		37,633	
근1	12,056	근1	봉선동 88공 일원	12,056	봉선2 근린공원
근103	20,675	근103	봉선동 134공 일원	20,675	유안공원
어1	4,902	어1	봉선동 1064-3공 일원	4,902	봉선2지구 공원

【변경】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 계		3획지		37,633	
근1	12,056	근1	봉선동 88공 일원	12,056	봉선2 근린공원
근103	20,675	근103	봉선동 134공 일원	20,675	유안공원 (위치조정)
어1	4,902	어1	봉선동 1064-3공 일원	4,902	봉선2지구 공원

※ 유안공원 남서측 일부를 제척하고, 공원 북측 인접토지 편입(면적 변경없음)

8) 녹지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문화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1	용 도	· 지정용도 - 문화회관, 도서관 등
		건 폐 율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준용 - 60% 이하
		용 적 륜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 준용 - 2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도면참조
건축한계선			· 도면참조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1 (변경없음)	용 도	· 지정용도 - 문화회관, 도서관 등
		건 폐 율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준용 - 60% 이하
		용 적 륜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 준용 - 2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도면참조
건축한계선			· 도면참조
-	공2 (신설)	용 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건 폐 율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준용 - 20% 이하
		용 적 륜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 준용 - 6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형 태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도면참조) - 2m 건축한계선 : 소1-168호선변 - 5m 건축한계선 : 대3-16호선변
대지내공지			· 서측 2m 녹지 확보 조성 · 남측 보행결점점 주변은 보행이 가능한 씬 지공원 형태로 조성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 주출입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공공청사 건축에 관한 계획(신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	공2 (신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간 보행동선 연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주차장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 계획 ·건축물에너지 관리 등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위하 여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거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설 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계획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소 계				15,327	11,342.26						
1	송정동	949-8	철	13,599	9,614.26	공	한국철도공사				
2	송정동	949-32	대	510	510	국	국토교통부				
3	송정동	949-75	대	411	411	국	국토교통부				
4	송정동	949-77	대	314	314	국	국토교통부				
5	송정동	949-78	대	165	165	국	국토교통부				
6	송정동	949-79	대	328	328	국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91호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389호

- 광주도시계획시설[철도:고속철도(송정역사주차장)사업]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15.

광 주 광 역 시 장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2-29(2020.3.28.)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제2020-252호(2020.6.26.)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와 서구청 도시정비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도면,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613-1773)와 서구청 도시재생과(☎360-769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15.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49-8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철도:고속철도) 사업

나. 명 칭 :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공사

3. 사업규모

시 설 명	총 규 모	금회시행	비 고
철 도	603,150㎡	A=11,342.26㎡	국고 185 ' 09.4.1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나. 성 명 : 한국철도공사 대표 손병석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착수일) ~ 2022. 5. 31.(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 등 관련조서 : 붙임

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구역명 :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서구 쌍촌동 510번지 일원
- 면 적 : 51,100㎡

연번	사 업 시행방식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 유형	계획 용적률	진폐율	비고
S7	주거환경개 선사업	기정	상무2동	쌍촌동 510번지 일원	51,100	현지 개량	190%	60%	

2.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결정

■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무2동(호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쌍촌동 510번지 일원	51,100	-	-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51,100		51,100	100.0		
주거용지	39,197	-	39,197	76.7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903	-	11,903	23.29	
	어린이공원	2,142	-	2,142	4.19	
	주차장	-	(2,142)	(2,142)	-	어린이공원에 중복결정
	도 로	9,761	-	9,761	19.10	

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계	51,100	-	-	100.0	
	일반주거지역	51,100	-	-	100.0	

라.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영 주차장	쌍촌동 531-1일대	-	2,142	2,142		중복 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영주차장	○신설 : 2,142㎡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고자 함

2) 공간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시행방법(변경)

■ 사업방식 : 현지개발방식

■ 정비사업시행시기

- 당초 : 2001. 12 ~ 2004. 12

- 변경 : 2001. 12 ~ 2023. 12. 31

■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및 시행방법

사업시행주체	사업내용	사업시행방법
서구청장	공공시설 설치 및 부지정지	토지매입 및 주택보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주택개발	자력개발

3. 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 및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 - 81호

광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29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동고제2020-49호)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15.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의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430-18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산수굴다리~구)재활용차고간 도로개설사업

3. 면적 및 규모

노 선 명	총연장(m)	기 시 행(m)	금회시행(m)	금후시행(m)	비 고
중로2-29호선	●L=477m ●B=15~16m	●L=311m ●B=15~16m	●L=166m ●B=15~16m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나. 성 명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변경인가고시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이  
의외 권리 명세서(변경) : 붙임 토지조서 참조  
(관계도면 및 지장물권 조서 등 기타권리명세서 게재는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토 지 조 서

(중로2류29호선 : 산수굴다리 ~구)재활용차고간 도로개설 )											
연번	소 계 지 동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소 유 자		소유권 이의 관계인		비고	
			전체	면적		성 명	주 소 (종달)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계	13필지		13,490	2,094						당초	
계	19필지		13,672	2,276						변경	
1	산수동 389-18 (389-5)	대	66.0	65.0	1	장성재	광주광역시 동구 농안로29번길 30, 103동 304호 (오치동, 한국야셀리움)				
2	산수동 390-34 (390-7)	대	69.0	16.0	1	구다영	광주광역시 서구 금부로 75(금호동)	계림신 용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 53		근저당
3	산수동 426-53 (426-2)	대	668.0	215.0	0.5	이형영	광주광역시 동구 서강로54번길 10, 203동1002호(은 암동, 롯데캐슬아파 트)	서창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92(금호동)		근저당 지상권
					0.5	이명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2길 28, 303호(하나빌 드, 벨리나빌)				
4	산수동 431-28 (431)	대	1,035.0	502.0	1	박윤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74, 107동 1103호(계림동, 두산위브아파 트)	무정농 업협동 조합	전라남도 남양군 무정로 519		근저당
5	산수동 390-32	대	82.0	82.0	1	이호정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390-11	농업협 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대인동지 점)		근저당
6	산수동 393-2	대	76.0	76.0	1	김행림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493				
7	산수동 505-9	도	44.0	44.0	1	국(건설부)					
8	산수동 374-24 7 (374-1)	공원	5,725.0	1,076.0	1	광주광역시					
9	산수동 374-24 9 (374-1)	공원	5,725.0	18.0	1	광주광역시					
10	산수동 389-17 (389-4)	대	43.0	40.0	1	국토교통부					
11	산수동 389-19 (389-14)	철	3.0	2.0	1	광주광역시					
12	산수동 390-33	대	5.0	5.0	1	재무부					
13	산수동 390-16	대	13.0	13.0	1	재무부					

[중로2류29호선 : 산수들다리 ~구)제활용창고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관계인			비고
	동	지번(당초)	지번		성명	주소(출발)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4	산수동	431-13	대 7 7	0.5	이형영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10, 203동1002호(온암동, 롯데캐슬아파트)	서강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92(금호동)	근저당 지상권		
				0.5	이명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2길 28, 303호(하나빌5차 벨리나빌)					
15	산수동	389-1	대 17 17	1	조복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389-1					
16	산수동	389-2	대 46 46	0.5	조복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389-1					
17	산수동	389-6	대 86 86	1	윤현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87-28					
18	산수동	389-8	대 23 23	1	이호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288					
19	산수동	389-13	대 3 3	1	김분광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372-6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77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동 305-10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광주광역시남구고시 제2020-72호, 2020.08.25)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체처리 결정된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09. 15.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지식동 더디시파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동 305-10번지 일원	-	증)50,992	50,99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신설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동 305-10번지 일원	○신설 - 면적 : 50,992㎡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 하고 대상지의 미관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0,992	-	50,992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0,228	감)41,590	8,638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1	증)41,590	41,781	81.9	
자연녹지지역	573	-	573	1.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동 305-10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증)41,590	○ 공동주택건설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공급 및 인구유입 유도, 도시미관 증진, 지역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종상향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정	중정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400	20	집산도로	6.370(101)	암촌동 400-9	지식동 39-1	일반도로	광고 114호(12.7.15)	
변경	중로	1	400	20-23	집산도로	6.370(101)	암촌동 400-9	지식동 39-1	일반도로	광고 114호(12.7.15)	
기정	중로	1	38	20	집산도로	9.741(145)	양과동 대1-5	송촌동 구역계	일반도로	전고24(75.2.18)	
변경	중로	1	38	20-22	집산도로	9.741(145)	양과동 대1-5	송촌동 구역계	일반도로	전고24(75.2.1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543(172)	지식동 270대	지식동 268-2학	일반도로	전고113(77.5.31)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183	지식동 270대	지식동 279전	일반도로	전고113(77.5.31)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188	지식동 270대	지식동 268-6학	일반도로	전고113(77.5.31)	
신설	소로	3	A	4	특수도로	51(51)	지식동 268-2학	지식동 268-2학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중로	2	A	15	집산도로	610(610)	지식동 73-2도	지식동 308-2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B	15	집산도로	120(120)	소로 2-B	중로 1-40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B	9	국지도로	230(230)	중로 1-38	중로 2-B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증1-400	증1-400	○ 폭원확장 - B = 20m → 20m-23m	○ 공동주택 진출입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폭원 확장
변경	증1-38	증1-38	○ 폭원확장 - B = 20m → 20m-22	○ 공동주택 진출입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폭원 확장
변경	소2-5	소2-5	○ 연장축소 - L = 543m → 183m	○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 분리에 의한 연장 축소
		소2-A	○ 신설(도로번호 신규부여) - L = 188m	○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번호 신규 부여
신설	-	소3-A	○ 신설 - B = 4m - L = 51m	○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신설	-	증2-A	○ 신설 - B = 15m - L = 610m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신설
신설	-	증2-B	○ 신설 - B = 15m - L = 120m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신설
신설	-	소2-B	○ 신설 - B = 9m - L = 230m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신설

○ 주차장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지식동 306전 일원	-	증)738	738		

○ 주차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어린이 공원	지석동 267전 일원	-	중)1,616	1,616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지역주민의 휴식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공동1	남구 지석동 305-10번지 일원	36,1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위 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1	공동1	용 도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복리시설
		용 적 률	○ 183%이하(허용·상한용적률 포함 최대) - 기준용적률 : 150% - 허용용적률 : 151.5% (빌트거류조 1%, 친환경올타리 0.5%) · 빌트거류조 360㎡이상 설치 · 친환경올타리 조성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 상한용적률 : 183.89% (기부채납 계획 이행) ※ 허용·상한용적률은 관련 조건 이행시 부여 가능
		건 폐 율	○ 20%이하
		높 이	○ 20층 이하(사업지 남측 주동 1열 18층이하) - 개발제한구역 경계에서 50m 이내 15층이하(결정도 참조) - 인접아파트 대지경계에서 50m 이내 14층이하(결정도 참조)
		배 치	○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 고려 배치 ○ 입면차폐도 36m이하
		건 축 선	○ 단지 남서측 : 결정도 참조 ○ 그 외 : 대지경계로부터 4m(부대복리시설은 대지경계로부터 2m)
		형 태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 형태의 지붕 계획 ○ 단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친환경 올타리 계획 ○ 공동주택의 주동길이는 70m이하, 입면적 3,500㎡이하
		대지내공거	○ 공개공지 : 공공이 휴식·녹지공간 등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공지 1개소(500㎡이상)조성
공공보행 통로	○ 단지 내에 사업지 북측과 남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폭 4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고시 도면 : 개재생략. 끝.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584호

도시계획시설(마륵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마륵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1.

광 주 광 역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마륵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 내용

- 1)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산7-14번지 일원
- 2) 면 적 : 229,603㎡
- 3) 변경사유 : 중로 1-58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 고시(제2020-21호, 2020.01.29.)에 따른 공원시설면적 변경
-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나.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9. 11. ~ 2020. 9. 28.(14일간)

다.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

- 1) 열 램 장 소 :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서구청 공원녹지과
- 2) 의견서 제출 : 메일 [2054qkr@korea.kr](mailto:2054qkr@korea.kr), 팩스 613-4219, 전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062-613-4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0-1214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공고

1. 우리 구 월산동 251-1번지 일원의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류A호선의 3개소)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사전열람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5.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 남구 월산동 25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중로3-A호선 외 3개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분	시 설 명	총 규모	급회계획	비 고
도 로	중로 3류 A호선	L=161m, B=12-15.0m	L=161m, B=12-15.0m	
도 로	중로 3류 B호선	L=241m, B=12-15.0m	L=241m, B=12-15.0m	
도 로	소로 2류 64호선	L=130m, B=8.0	L=7m, B=8.0	
도 로	소로 2류 65호선	L=544m, B=8-10.0m	L=306m, B=8-10.0m	

4. 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지오빌딩 9층
- 성 명 : 월산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장 승 일



75	"	585	전	370.0	-	81.0	-	-	81.0	시남구청 월산**지 역주택조 합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76	"	893-5	도	433.0	23.0	-	-	-	23.0	국토교통 부						
77	"	893-13	대	36.0	22.0	-	-	-	22.0	월산**지 역주택조 합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78	"	893-15	대	36.0	21.0	-	-	-	21.0	월산**지 역주택조 합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79	"	893-24	대	1.0	1.0	-	-	-	1.0	국(세무 부)						
80	"	산13 7-2	읍	694.0	-	10.0	-	-	10.0	월산**지 역주택조 합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731호**

**첨단2산업 체육공원 조성계획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 첨단2산업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5.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공 원 명 : 첨단2산업 체육공원

- 위 치 : 북구 연제동 1059번지

- 면 적 : 21,176.20㎡

**- 조성계획 내용**

· 체육관 건립, 도로 및 광장 · 주차장 · 녹지조성 등

2. 열람기간 및 장소 : 2020년 9월 15일 ~ 2020년 9월 28일(14일간)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62-410-6446)

3.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fax062-510-1578

4.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20-1590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내,세,송동소로3-1,3-3호선)인 **삼도 세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자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5.

**광 산 구 청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 송산동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노 선 명	연장 (m)	폭원 (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연장 (m)	시 점
소로3류 1호선	803	6	송산동 743-4	송산동 954-4	151	송산동 1305-4
소로3류 3호선	128	6	소로 3-1호선	소로 3-5호선	128	소로 3-1호선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내,세,송동소로 3-1, 3-3호선)

o 명 칭 : 삼도 세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o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1395-4번지 일원(송산동)

o 성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착 수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o 준공예정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o 일 시 : 광주시보 게재일로부터 15일간 (2020. 09. 15. ~ 2020. 09. 29.)

o 장 소 : 광산구청 5층 건설과 (062-960-856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신청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 구분	성 명	
<b>계</b>		<b>21필지</b>		<b>2,145</b>	<b>2,145</b>					
1	광산구 송산동	753-9	도로	6	6		광주광역시			
2	광산구 송산동	산10-4	임야	17	17		광주광역시			
3	광산구 송산동	1395-4	도로	560	560		국 (국토교통부)			
4	광산구 송산동	753-6	답	3	3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 100, 104동 1504호 (우산동, 현대아파트)	한정택			
5	광산구 송산동	753-7	도로	61	61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 47, 102동 308호 (쌍촌동, 쌍촌주공아파트)	신양애			
6	광산구 송산동	758-2	도로	66	66	광주 광산구 삼도지동길 28 (도덕동)	오교영			
7	광산구 송산동	758-3	전	253	253	광주 광산구 삼도지동길 28 (도덕동)	오교영			
8	광산구 송산동	산10-3	임야	16	16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10번길 5, 603동 901호 (동천동, 동천마을6단지아파트)	나주오씨 부사공과 백원중중 대표자 오백열	채권자 (가압류)	주식회사 이한산업개발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3층(치평동)
9	광산구 송산동	759-1	묘지	49	49	광주 광산구 삼도지동길 28 (도덕동)	오교영			
10	광산구 송산동	760-1	묘지	78	78	광주 광산구 삼도지동길 28 (도덕동)	오교영			
11	광산구 송산동	산10-2	임야	17	17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10번길 5, 603동 901호 (동천동, 동천마을6단지아파트)	나주오씨 부사공과 백원중중 대표자 오백열	채권자 (가압류)	주식회사 이한산업개발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3층(치평동)
12	광산구 송산동	762-1	전	97	97	전라남도 함평군 월이면 순촌길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42-25, 104동 505호 (월계동, 첨단신경아파트)	박상노			지분 (1/2)
13	광산구 송산동	763-1	전	219	2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세동길 45 (송산동)	김명남	근저당	삼도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35(도덕동)
14	광산구	752-3	답	71	71	광주광역시 서구	오명구	근저당	삼도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지분

					온천로 154번길 30-7, 1동 201호(쌍촌동)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67, 209동 401호 (양유내안에 리버시티 2차)		당지상권	업협동조합	광산구 삼도로 335(도덕동)	(5/7)
송산동						오혜윤	지상권	삼도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35(도덕동)	지분 (2/7)
15	광산구 송산동	752-2	도로	202	202	광산군 삼도면 송산리 811	오광한			
16	광산구 송산동	751-4	도로	11	1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53번길 20 (풍암로)	임선주			
17	광산구 송산동	765-7	도로	4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세동길 44-6 (송산동)	오준수			
18	광산구 송산동	765-8	담	1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35(도덕동)	삼도농업협동조합			
19	광산구 송산동	766-2	도로	149	149	광산군 삼도면 송산리 826	오희수			
20	광산구 송산동	765-9	창고용지	212	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35(도덕동)	삼도농업협동조합			
21	광산구 송산동	766-3	도로	53	53	광산군 삼도면 송산리 826	오희수			

※ 편입토지 및 물건 조서 등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